



제426회 국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재난피해자 관리단 구성·운영 근거 마련〉

■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692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나아정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춘생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5. 1. 21.
3. 회부연월일 : 2025. 1. 22.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범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5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재해·재난과 관련하여 사회적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대량의 인명 사고가 발생하여 대량재해사망자관리단의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게 대량재해사망자관리단 구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대량재해사망자 또는 희생자 관리단 운영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예규로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같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난피해자 관리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해당 관리단의 업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지원의 법률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신설).

###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규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구성·운영하고 있는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구성·운영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그 명칭을 ‘재난피해자 관리단’으로 하고, ‘재난피해자 관리단’ 구성 시에 피해자 규모를 고려하도록 하며, ‘재난피해자 관리단’의 업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u>&lt;신설&gt;</u> | <p><u>제69조의2(재난피해자 관리단) ①</u><br/> <u>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난피해자(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발생한 경우 이들에 대한 종합적 감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 관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u></p> <p><u>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피해자 관리단을 구성함에 있어 피해자 규모를 고려하여야 한다.</u></p> |

| 현행 | 개정안                                                   |
|----|-------------------------------------------------------|
|    | ③ <u>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피해자 관리단의 업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u> |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자연재해, 재난 및 대형사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대규모 인명사고 피해에 대하여 종합적인 감정을 지원하기 위한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예구에 따라 구성·운영<sup>1)</sup>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12월 29일에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유해 수습과 DNA 감식을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의 검안의가 파견되었으나, 인력과 장비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검시 업무가 지연됨에 따라 유가족의 신속한 시신 수습에 지장이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8조(대량재해희생자 관리) ① 연구원은 자연재해, 재난 및 대형사건·사고 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의 인명사고 피해에 대하여 종합적 감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을 구성·운영한다.
- ②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장은 법의학 부장으로 하고 단원은 감정 인력과 감정지원 인력 중 원장이 지명한다.
- ③ 각 부서의 장 및 소장은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장의 지원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장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추진상황을 수시로 원장에게 보고한다.
- ⑤ 기타 대량재해희생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적 감정처리 규정」 제15조(대량재해희생자 관리) ① 법의학부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을 관리·운영한다.
- ② 법의학부장은 재해·재난과 관련하여 사회적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대량의 인명 사고가 발생하여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의 구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대량재해희생자관리단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대규모 참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유가족들의 가장 시급한 요청은 피해자들의 신원확인 및 유해 수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위한 국가의 감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재난피해자 관리단의 구성·운영 주체를 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구성 시 피해자의 규모를 고려하도록 하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두어 전문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업무의 범위 및 명칭과 관련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기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절차 규정」에서와 같이 ‘재난피해자 관리단’의 업무 범위를 “종합적 감정지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감정업무를 수행하는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측면이 있으므로, 검안, 신원확인 등 실제 수행하여야 하는 감정 업무의 유형을 명시하거나 관련 내용을 위임하여 규정하도록 수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감정업무를 지원하는 기구의 명칭을 ‘재난피해자 관리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기구는 재난으로 사망한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목적에서 구성·운영되는 것이므로,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뿐만이 아니라 상해를 입은 사람, 유족, 이재민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용어인 ‘재난피해자’보다는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만을 의미하는 ‘재난희생자’로 명칭을 수정하여 관리단의 역할에 대해 오인할 소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행정안전부도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재난피해자 관리단이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개정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349 |